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6
----------	-----

2023. 3. 24.(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23년 3월 7일
-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9일
- 라. 상정일자 : 제40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년 3월 22일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가. 제안이유

- 인력난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 및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도민이 서로 연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라는 취지와 목적을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종전의 “생산적 일손봉사” 를 “일손이음” 으로 새롭게 변경하고,
- 다소 모호하게 규정된 일부 조문을 구체화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 충청북도 일손이음 지원 조례
- “일손이음” 등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정비(안 제2조)
- 일손이음 지원사업 수행 시장·군수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및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6조)
- 일손이음 참여자에 대한 실비 등 지원 규정 정비(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

가. 이 조례안은 “생산적 일손봉사”를 “일손이음”으로 바꾸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과연 이러한 명칭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행정 낭비는 아닌지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또한 이 조례안 제6조 제1항에서 홍보물 제작·구입비, 일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신설하여 3개 각호에서 6개로 확대하였는데 이와 관련 예산확보의 문제는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를 “충청북도 일손이음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족한 생산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가와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를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와 경영개선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등을 말하며,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별표1업종 중 제조업으로 분류된 기업을 말한다”를 “등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일손이음”이란 도시지역 등 유희인력과 생산적 일자리를 서로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일손봉사 활동을 말한다.
3. “도시지역 등 유희인력”이란 일손이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와 노동능력을 보유한 도시지역 등에 거주하는 은퇴자 등 유희인력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중에서 제조업으로 분류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실비”란 일손봉사 활동과 관련하여 일손이음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교통비·식비 등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참여시간) 일손이음의 참여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로 한다.

제4조 중 “범위는”을 “범위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손이음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제3호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를 “도지사가 지원이”로, “농가·중소기업 등”을 “자”로 한다.

제6조의 제목“(실비 규모 등)”을“(경비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산적 일손봉사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군수 등 기관·단체에 대하여”를 “일손이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장·군수, 관련 기관 및 단체(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로, “예산 또는 물품을”을 “경비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실 경비”를 “실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차량비 등”을 “차량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일손이음 참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
4. 홍보물 제작·구입비
5. 일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예산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를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으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비 또는 물품을 일손이음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실비 또는 물품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의 제목“(실비 등 지급절차)”를“(실비의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산적 일손봉사를 수행하는 시장·군수 및 기관·단체는 생산적 일손봉사”를 “시장·군수등은 일손이음 참여”로, “후 생산적 일손봉사”를 “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참여자는 일손봉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농가·중소기업 등은 참여

자의 안전한 일손봉사 활동 수행에 필요한 작업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군수등은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비를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참여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후단 중 “시장·군수 및 기관·단체 등은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생산적 일손봉사”를 “시장·군수등은 해당 참여자에 대하여 일손이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생산적 일손봉사 중에”를 “일손이음 참여 과정에서”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도지사는 일손이음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의2의 제목 “(생산적 일손봉사 진흥)”을 “(일손이음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 개인, 단체, 공무원 등을”을 “일손이음의 진흥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 및 공무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일손이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일손이음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와 <u>중소기업의 생산적 일자리</u>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일손봉사에 참여하는 도시지역 등 유희인력에 대하여 일정액의 실비 지급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농가 및 <u>중소기업의 부족한 생산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가와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적 일자리”란 충청북도 소재 농가 및 <u>중소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말한다.</u> 2. “생산적 일손봉사”란 도시지역 등 유희인력이 농가 및 <u>중소기업의 생산적 일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일손봉사를 말한다.</u> 3. “도시지역 등 유희인력”이란 <u>생산적 일손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노동능력과 노동의지가</u>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 일손이음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u>중소기업 등</u> ----- ----- ----- ----- <u>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와 경영개선 및</u> ----- -----.</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u>중소기업 등</u> ----- -----. 2. “일손이음”이란 도시지역 등 <u>유희인력과 생산적 일자리를 서로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일손봉사 활동을 말한다.</u> 3. “도시지역 등 유희인력”이란 <u>일손이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와 노동능력을 보유한</u>

있는 도시지역 등의 유희인력을 말한다.

4. “농가”란 농업·화훼·축산업·수산업·임업 등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농장 및 농작물 가공·유통시설 등을 말하며,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별표1업종 중 제조업으로 분류된 기업을 말한다.

5. “실비”란 충청북도 및 시·군이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교통비·식비 등의 실경비를 말한다.

<신 설>

제3조(생산적 일손봉사의 범위) 생산적 일손봉사는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생산적 일자리에서 1일 4시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손봉사에 한한다.

제4조(도시지역 등 유희인력의 범위) 도시지역 등 유희인력의 범위는 따로 정한다.

도시지역 등에 거주하는 은퇴자 등 유희인력을 말한다.

4. -----

----- 등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중에서 제조업으로 분류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실비”란 일손봉사 활동과 관련하여 일손이음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교통비·식비 등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참여시간) 일손이음의 참여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로 한다.

제4조(도시지역 등 유희인력의 범위) ----- 범위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

제5조(지원대상) 생산적 일손봉사의 지원대상 농가 및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삭 제
3.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중소기업 등

제6조(실비 규모 등) ① 도지사는 생산적 일손봉사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군수 등 기관·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정액의 실 경비
2. 생산적 일손봉사 중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
3. 수송료 및 차량비 등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지원대상) 일손이음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3. ----- 도지사가 지원이 -----

----- 자

제6조(경비의 지원 등) ① ----- 일손이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장·군수, 관련 기관 및 단체(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 경비를 -----
-----.

1. ----- 실비
2. 일손이음 참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
3. ----- 차량비
4. 홍보물 제작·구입비
5. 일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군수 등 기관·단체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 또는 물품을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에게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의 실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의 종류와 규모,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실비 등 지급절차) ① 생산적 일손봉사를 수행하는 시장·군수 및 기관·단체는 생산적 일손봉사 사실을 확인한 후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는 생산적 일손봉사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농가·중소기업은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가 생산적 일손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성실히 마련하여야 한다.

③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비 또는 물품을 일손이음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실비 또는 물품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실비의 지급 등) ① 시장·군수등은 일손이음 참여 -----

----- 후 -----

-----.

② 참여자는 일손봉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농가·중소기업등은 참여자의 안전한 일손봉사 활동 수행에 필요한 작업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실비를 지급받은 경우 생산적 일손봉사 업무를 수행한 시장·군수 및 기관·단체 등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기관·단체 등은 해당 행위에 대하여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생산적 일손봉사 중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일괄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단체와의 협력 등) 도지사는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단체·기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의2(생산적 일손봉사 진흥) ① 도지사는 생산적 일손봉사의 자발적 참여 촉진을 위해 시·군 및 기관·단체 등 사업추진 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 개인, 단체,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참여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

----- 시장·군수 등은 해당 참여자에 대하여 일손이음 -----

④ ----- 일손이음 참여 과정에서 -----

제8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도지사는 일손이음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의2(일손이음의 진흥) ① 도지사는 일손이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일손이음의 진흥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 및 공무원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본 조례안은 사업명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사유에 해당함.

○ 작성자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장 정정훈